

I. 검토배경

- 신BIS규제는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범금융권적 자기자본규제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, 보험권도 신BIS규제의 프레임워크 및 감독방향을 적극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.
 - 즉 신BIS규제의 틀에 기초하여 추진하고 있는 EU Solvency II는 2010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, EU Solvency II에 의해 RBC식 자기자본규제로의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.
 - 감독당국 역시 리스크중시 감독정책의 일환으로 **RBC식 지급여력제도** 및 **RAAS식 리스크평가제도**의 도입을 적극 추진 중임.
- 이에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국가들은 해당국가 특성을 고려한 **지급여력평가 모형을 개발**, 지급여력제도상의 지급여력기준(요구자본)을 산출하거나 보험사 리스크평가 모형으로 활용하고 있음.
 - 따라서 지급여력제도상의 요구자본 산출이외에 보험회사의 리스크 평가모형 적용차원에서도 각국의 지급여력평가모형 특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존재함.
 - 즉 **보험종목별 요구자본 산출방법, 요구자본 관련리스크, 요구자본 시 실질가치 반영방법, 요구자본 평가방법** 측면에서 지급여력평가모형의 비교가 있어야 할 것임.
- 본 연구는 지급여력평가모형의 국제적 트렌드, 지급여력 평가모형 적용 및 방법상의 비교 등을 통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 - 이를 위해 미국, 영국, 독일, 스위스, 네덜란드, 캐나다, 호주, 싱가포르 등의 요구자본 산출모형을 비교분석함.